2026. 1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경 기 도
(기후환경관리과)

목 차

1. 사업개요 ····· 1

2. 보조금 교부 ····· 2

3.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 3

4.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4

5. 보조사업 사후관리 ····· 8

[붙임 1]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 2]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
[붙임 3]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4] 수질개선 지원사업 현장평가표
[붙임 5] 수질개선 지원사업 심의위원 평가표
[붙임 6] 수질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붙임 7] 수질개선 지원사업 실적보고
[참고 1] 지원대상 선정절차
[참고 2] 수질오염방지시설
[참고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참고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참고 5] 이행확인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재정이 열악하여 환경오염방지 설비 투자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여 환경관리 부담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나. 근 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 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결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원계획

○ 사 업 비 : 510,714천원(도비 164,000, 시·군비 193,500, 자부담 153,214)

○ 사업방식 : 자지단체 자본보조

< 2026년도 시·군별 사업예산 >

(단위 : 천원/개소)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도비 보조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30%)	
합 계	**5**	**510,714**	**164,000**	**193,500**	**153,214**	
파주시	1	**100,000**	28,000	42,000	30,000	40
양주시	1	**110,714**	31,000	46,500	33,214	40
포천시	1	**100,000**	35,000	35,000	30,000	50
동두천시	1	**100,000**	35,000	35,000	30,000	50
연천군	1	**100,000**	35,000	35,000	30,000	50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6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 시군별 사업비 범위내 사업 수요에 따라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금 교부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경기도)**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시·군)**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 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 시·군에서는 직접 수행 또는 전문기관(경기대진TP 등)에 협약 및 계약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

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 **(집행계획 수립)** 시·군은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사업 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지방비 보조)** 경기도는 보조금 집행 시 시군비 보조금 비율(3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집행 준수사항)** 시·군은 보조금 집행 시 물환경보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 보조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한함

○ **(별도계정 관리)** 시·군은 교부받은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시·군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시공,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라.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 **(교부신청 및 교부)** 시·군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 1 서식)**를 경기도에 제출

-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 교부 통보**(붙임 2 서식)**

- 시·군에서 사업 물량 변경 등으로 도비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교부결정의 취소)** 경기도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한 경우 즉시 경기도에게 보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군은 해당하는 도비보조금(이자 포함)을 경기도에 반납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 반납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시·군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3.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 경기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10개 시·군)

-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주유소, 세차, 자동차정비 등 오염 부하량이 낮은 생활서비스 업종은 지원 자제

○ **(우선지원)** 시군별 특성에 따라 아래 예시 등으로 우선순위 및 범위 설정

-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등 주요 정책추진 하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하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 폐수 배출사업장
- 최근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 폐수처리공법을 변경하여 수질개선에 기여도가 높게 예상되는 사업장
- 기타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개별업체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은 예외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무사용기간은 환경시설 특성상 내구성 및 처리효율이 감소되는 통상적인 기간 "3년"으로 한다.

나. 시공사 선정

○ **(시공업체 선정)** 지원 사업장에서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장은 폐수처리시설 설계서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승인받아야 함

○ **(시공가능 업체)**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시설공사 업체이어야 함

- 단, 폐수처리시설 공사 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체(수질)* 등록업체여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업」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다. 보조금액 및 집행범위

○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70% 지원(최대 70,000천원)

○ **(집행범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교체 공사

※ 방지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펌프, 브로워, 배관, 철구조물 등) 교체 및 보수 비용 포함,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4.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가. 보조금 지급 절차

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검토	➡	사업승인	➡	허가 등 신청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배출업체 → 지자체

수질방지시설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시공업체		시공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		지자체 → 시공업체

○ **(사업신청)** 사업장 및 시공업체는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3 서식)**를 시·군에 제출

-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 자가측정 결과 등 제출

※ 시·군 또는 위수탁기관은 사업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 **(신청서 등 검토)** 폐수처리시설 노후도, 시설의 적합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환경민원 발생, 개선효과 등 종합검토 실시

- 시·군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군은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필요시 전문기관(경기대진TP 등), 수질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사업장 현장조사 실시

○ **(현장평가)** 서류검토가 완료된 신청업체는 현장평가표**(붙임 4 서식)**에 의하여 현장평가 실시

- 지역발전 기여도, 환경개선 시급성
- 신청기업의 환경민원 발생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환경오염 저감 기대효과, 지원사업의 부합성, 기타 적용 여부 등

※ 전문기관 또는 수질관련 전문가 협조를 통해 사업장 현장평가 진행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신청업체에 통보

※ 현장평가(30%) + 심의위원회* 평가(70%) 반영, 심의위원 평가표 **(붙임 5 서식)**

< 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위원회 구성

- 시·군 또는 위수탁 기관은 공정한 지원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 항에 따라 10인 이상으로 심의위원단을 구성하고, 5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개최

① 대기, 수질 등 환경관련 기술사 ② 환경시설 설계 및 운영 등의 전문가
③ 환경관리 및 정책 전문가 ④ 환경산업, 중소기업육성 등 산업관련 전문가
⑤ 환경관련학과 교수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환경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및 후보기업 선정
- 지원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사업비 타당성 검토
- 기타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시·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군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 계약체결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군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전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신청서 제출

○ **(방지시설 설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완료
- 폐수처리시설 교체 완료 후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실시

○ **(준공심사)**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현장 확인

※ 전문기관 또는 수질관련 전문가 협조를 통해 준공심사 진행

○ **(오염도검사)** 사업승인 및 준공심사 시 방류수 수질상태 분석 의뢰

※ 전문분석기관(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협조를 통해 방지시설 오염도 저감효율 분석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붙임5 서식)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날인 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보조금 지급)** 시·군은 시공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6 서식)**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나. 보조금 회수

○ **(보조금 환수)** 시·군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폐수처리시설 미사용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폐수처리시설 사용기간은 가동개시 신고서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 이전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폐수처리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폐수처리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다.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시·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붙임 6 서식)**

○ **(정산이자 반납)** 시·군은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경기도에 반납 조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정산결과 검토)** 시·군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

- 정산 완료 후 시·군은 경기도지사에게 정산 결과를 보고

5. 보조사업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 **(관리실태 확인)** 시·군은 도비보조금을 받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업체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확인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 동안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개선시설 확인 등 관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체 관계자와 피드백 실시 (연 1회 이상)

[붙임 1]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시·군명		
사 업 명	2026년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사업목적	영세 중소기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및 하천 수질을 개선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합계	**도비**	시비	기타(자부담)
계좌번호			
사업계획서	" 따 로 붙 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신청기관) : 시장·군수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2]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서

☐ 사 업 명 :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파주시 등 5개 시·군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수질 환경개선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기 교 부	**금회교부**		
계	0	0	0	**0**	0	

☐ 예산과목

부서)기후환경관리과, 정책)환경안전관리, 단위)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세부사업)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 사업(자체/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보조사업 계획서에서 확정된 자체부담액 확보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보조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원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는 회수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 통보하오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붙임 3]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F A X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	주 생산품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종 별	신고필증에 명시된 종수	환경담당자	성명 : OOO (연락처 :) (e-mail :)
사업내역	배출시설명 (용량)		방지시설명 (용량)	
	설치·개선 내용			
	재 원 별 (VAT제외) *만단위 절사*	총소요금액	금000원(금 원)	
		지원신청액	금000원(금 원)	
		자체부담액	금000원(금 원)	
시설공사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		
	대표자 (담당자)	대표자 : OOO (연락처 :) 담당자 : OOO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입력)		

위와 같이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 (인감도장)

신청인(시공업체 대표자) ㊞ (인감도장)

시·군 또는 전문기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2부) 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업체)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4]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현 장 평 가 표

평가일 : 20 . . .

신청업체명		소재지	
신청내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공통부분 (20점)	지역발전 기여도 (신규시설 경우 가중치 적용 x 2)	사업 영위기간	10	8	6	4	2
	환경개선 시급성 (신규시설 경우 미적용)	환경시설 경과년수	10	8	6	4	2
행정업무 관련 (30점)	환경분야 취약성 (신규시설 경우 가중치 적용 x 2)	환경민원 발생 횟수	20	16	12	8	4
	환경분야 취약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	10	8	6	4	2
환경시설 관련 (20점)	환경시설 지원 여부 (신규시설 경우 미적용)	환경시설의 지원 여부	20	16	12	8	4
공기관 사업 관련 (20점)	지원시설 환경저감 정도	환경오염저감 기대효과	10	8	6	4	2
	공기관 지원사업의 부합성	공기관 사업의 부합성	10	8	6	4	2
기타(10점)	공기관, 지자체 추천기업	사업의 우선순위	10	8	6	4	2
총계(100점)							

- 평가의견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현 장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가일 : 20 . . .

신청업체명		소재지	
신청내역			

체크항목		평가지표	체크항목	
공통부분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 영위기간 (신규시설 경우 가중치 적용 x 2)	- 11년 이상 (10점) - 8년 ~ 10년 이하 (8점) - 5년 ~ 7년 이하 (6점) - 2년 ~ 4년 이하 (4점) - 1년 이하 (2점)	
	환경개선 시급성	환경시설 경과년수 (신규시설 경우 미적용)	- 11년 이상 (10점) - 8년 ~ 10년 이하 (8점) - 5년 ~ 7년 이하 (6점) - 2년 ~ 4년 이하 (4점) - 1년 이하 (신규포함) (2점)	
행정업무 관련	신청기업 환경민원 발생여부	환경민원 발생 횟수 (신규시설 경우 가중치 적용 x 2)	- 민원발생 4회 이상 (20점) - 민원발생 3회 (16점) - 민원발생 2회 (12점) - 민원발생 1회 (8점) - 민원발생 0회 (4점)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	- 배출허용초과 4회 이상(10점) - 배출허용초과 3회 (8점) - 배출허용초과 2회 (6점) - 배출허용초과 1회 (4점) - 배출허용초과 0회 (2점)	
환경시설 관련	환경시설 지원 여부	환경시설의 지원 여부 (신규시설 경우 미적용)	- 부식으로 인한 유체의 누수 흔적이 있는가? - 펌프 및 송풍기 등 부속품의 이상 발생이 있는가? - 용접 등을 이용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부위가 있는가? - 환경시설 외관에 심각한 녹이나 부식 등의 노후가 있는가? - 환경시설 내부 중요시설물의 노후로 처리효율이 감소되었는가?	
사업 관련	지원시설 환경저감 정도	환경오염저감 기대효과	- 환경오염저감 (71% 이상) - 환경오염저감 (51 ~ 70%) - 환경오염저감 (31 ~ 50%) - 환경오염저감 (11 ~ 30%) - 환경오염저감 (10% 이하,)	
	공기관 지원사업의 부합성	공기관 사업의 부합성	- 지원분야가 공기관 사업에 부합되는가? - 지원사업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가? - 지원사업으로 신청업체의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 지역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이 되는가? - 지원사업이 다수의 환경오염저감에 도움이 되는가?	
기 타	공기관, 지자체 추천기업	사업의 우선순위	- 전년도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기업 - 지자체 우선 지원 추천기업 - 기업환경진단개선사업 추천기업	

1. 평가항목 : 지역발전 기여도

지표명	사업 영위기간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신청기업이 현 장소에서 사업장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를 확인하여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
- 11년 이상 (10점)
- 8년 ~ 10년 이하 (8점)
- 5년 ~ 7년 이하 (6점)
- 2년 ~ 4년 이하 (4점)
- 1년 이하 (2점)

11년 이상	8년 ~ 10년	5년 ~ 7년	2년 ~ 3년	1년 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2. 평가항목 : 환경개선 시급성

지표명	환경시설 경과년수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 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신청기업의 기존 환경시설 설치연도를 확인하여 환경개선 시급성을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환경시설 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여 환경시설의 설치연도를 확인하여 시설의 개선 시급성을 평가
- 11년 이상 (5점)
- 8년 ~ 10년 이하 (4점)
- 5년 ~ 7년 이하 (3점)
- 2년 ~ 4년 이하 (2점)
- 1년 이하 (1점)

11년 이상	8년 ~ 10년	5년 ~ 7년	2년 ~ 3년	1년 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3. 평가항목 : 환경분야 취약성

지표명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신청기업 주변지역에 민원발생 빈도를 확인하여 환경시설 지원사업의 시급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민원발생 빈도를 확인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평가

- 민원발생 4회 이상 (20점)
- 민원발생 3회 (16점)
- 민원발생 2회 (12점)
- 민원발생 1회 (8점)
- 민원발생 0회 (4점)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20점	16점	12점	8점	4점

4. 평가항목 : 환경분야 취약성

지표명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신청기업 관할 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배출허용기준 초과 4회 이상(10점)
- 배출허용기준 초과 3회 (8점)
- 배출허용기준 초과 2회 (6점)
- 배출허용기준 초과 1회 (4점)
- 배출허용기준 초과 0회 (2점)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10점	8점	6점	4점	2점

5. 평가항목 : 환경시설 지원 여부

지표명	환경시설의 지원 여부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신청기업 환경시설의 노후 정도를 확인하여 환경시설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환경시설 지원여부를 시설의 노후도로 평가
- 부식으로 인한 유체의 누수 흔적이 있는가?
- 펌프 및 송풍기 등 부속품의 이상 발생이 있는가?
- 용접 등을 이용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부위가 있는가?
- 환경시설 외관에 심각한 녹이나 부식 등의 노후가 있는가?
- 환경시설 내부 중요 시설물의 노후로 처리효율이 저감되어 있는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5개 항목 만족	4개 항목 만족	3개 항목 만족	2개 항목 만족	1개 항목 만족

6. 평가항목 : 개선시설 환경오염 저감 정도

지표명	환경오염저감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해당 기업에서 신청한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시설의 기존 시설 대비 환경오염 저감 기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환경오염 저감 정도를 이론적 계산에 의한 기존 환경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지원 환경시설 환경오염 예상 저감률을 평가하고자 함
- 환경오염 예상 저감률 (71% 이상) (10점)
- 환경오염 예상 저감률 (51 ~ 70%) (8점)
- 환경오염 예상 저감률 (31 ~ 50%) (6점)
- 환경오염 예상 저감률 (11 ~ 30%) (4점)
- 환경오염 예상 저감률 (10% 이하) (2점)

※ 단, 환경시설의 부속시설 지원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10% 이하로 한다.

71% 이상	51 ~ 70%	31 ~ 50%	11 ~ 30%	10% 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7. 평가항목 :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지표명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신청기업에서 신청한 환경개선 지원시설이 보조사업 취지와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에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지원사업 취지 및 환경오염 환경시설 지원사업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운영 지침의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지원분야가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되는가?
  ※ 수질 분야에 해당 여부
- 지원사업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가?
  ※ 시·군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사업으로 신청업체의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 지원사업으로 단순 지원이 아닌 근본적 환경문제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지역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이 되는가?
  ※ 사업장 주위에 환경오염 저감 정도로 지역 환경오염 저감 여부
- 지원사업이 다수의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이 되는가?
  ※ 환경오염 저감으로 국소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오염 저감으로의 영향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5개 항목 만족	4개 항목 만족	3개 항목 만족	2개 항목 만족	1개 항목 만족

8. 평가항목 : 공기관, 지자체 추천기업

지표명	사업의 우선순위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현장 확인결과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지표개요]

신청기업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1개 항목 해당시 점수부여

- 전년도 지원사업 신청기업
- 지차체 우선 지원 추천기업
-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추천기업(최근 2년 이내)

[붙임 5]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심 의 위 원 평 가 표

평가일 : 20 . . .

신청업체명		소재지	
신청내역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낮음	다소낮음	평점
			10~9	8~7	6~5	4~3	2~1	
개선효과	x 2	ㅇ개선목적 및 개선방식 적절성 ㅇ주변지역 환경오염 개선정도 ㅇ개선목표 달성정도						
기술의 적합성	x 3	ㅇ설계의 적정성 및 기능성 ㅇ신기술 및 고도처리 기술 ㅇ검증된 환경시설 여부						
공사비용의 적정성	x 2	ㅇ설계서 내역에 대한 산출의 적정성 ㅇ산출물량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 ㅇ자료의 신뢰성 및 개선계획서 작성 성실도						
사업의 우선순위	x 3	ㅇ환경오염 개선 및 민원 해결정도 ㅇ신청기업의 영세성 및 사업추진 의지 ㅇ사업비 절감 및 공사금액의 경제성						
총 계 (100점)								

심의위원 : (서명)

[붙임 6]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보 조 금 청 구 서

공 사 명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시군명) OOOOOO 교체 공사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준공검사일	년 원 일
총 소요금액	금000원(금 원)		
보조금 승인액	금000원(금 원)		
자부담	금000원(금 원)		

청구내용	시공업체	보조금 청구액(원)	입금내역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대표자) (인감도장)

시공업체명(대표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하자보험이행증권(시공업체→사업장, VAT포함, 2년, 5%) 2. 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3. 자부담 입금 확인증 4. 통장 사본(시공업체)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시공업체) ※ 유효기간 필히 확인

[붙임 7]

2026년「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실적보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00천원(도비 00천원, 시·군비 00천원) / 도비 보조율 00%

○ 사 업 량 : 00개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4년 예산집행 현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수입
합 계				
도 비				
시·군비				

※ 이자수입은 시·군과 사업대행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산(이자발생 기준일 : '24.12.31)

□ 추진실적

○ 사업추진 현황(세부집행내역 등)

○ 사업추진 관련사진(사업장별, 시설별 전·후 사진 첨부)

〈사업장명 : 000 / 시설명 : 000〉

개선 전	개선 후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기타 개선사항 등

○

[참고 1]

지원대상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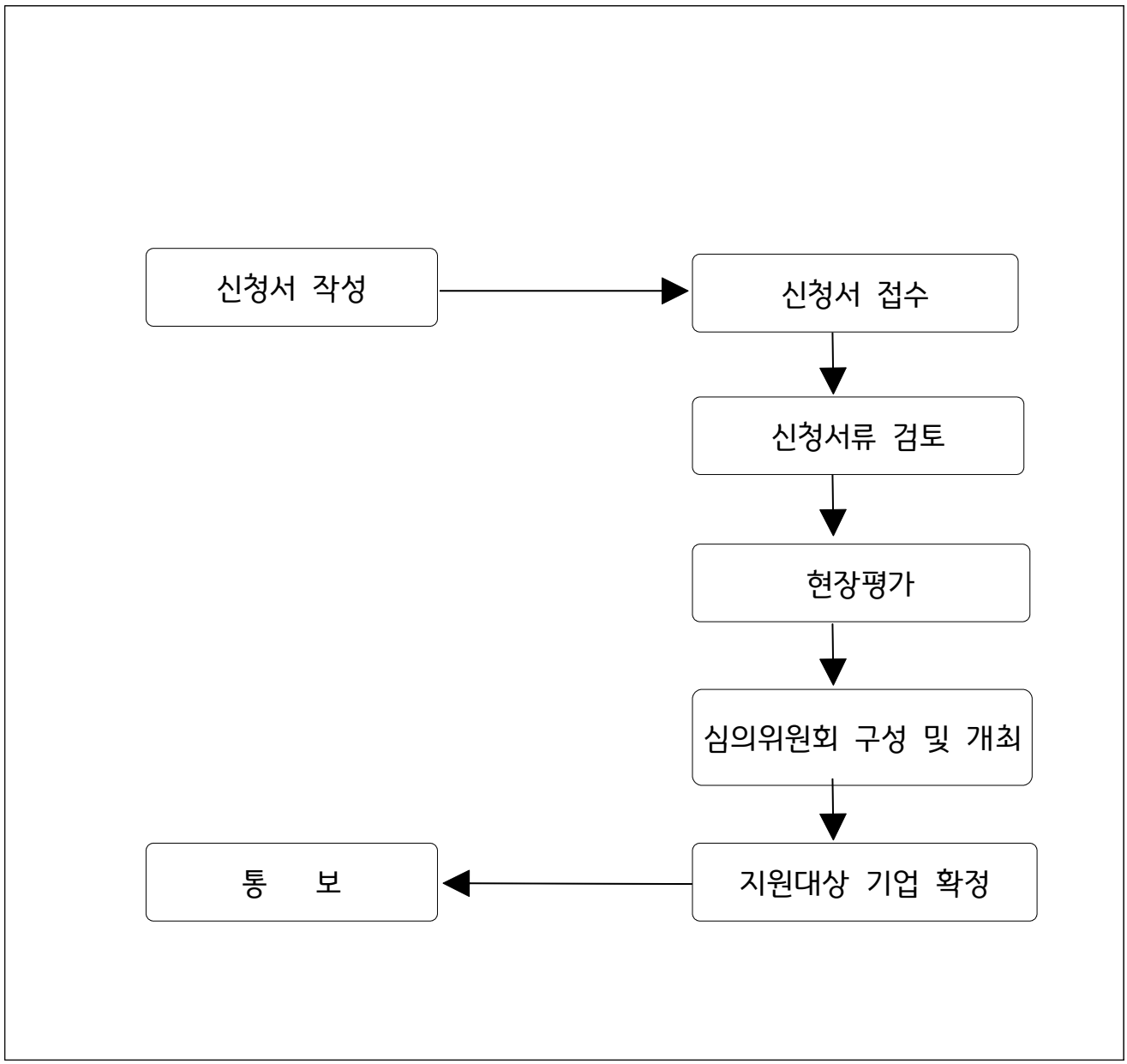

[참고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참고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수질개선 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시공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참고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 5]

이 행 확 인 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
	주 소	
환경전문 공사업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
	주 소	

상기 본인은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시장·군수 귀하